

제13장 감정

제17조(선서)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.

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.

③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혀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」라고 기재하여야 한다.

④제157조의 제3항,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.

14. 山格아파트地籍整理推進經緯調查案

發議年月日：1992. 12. 22

發 議 者：金鉉模議員 外 9人

1. 調査의 目的

- 산격아파트가 '79년, '80년 각각 신축분양된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, 아파트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,
- 입주민들의 공유지분 감소분 환원요구와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및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
- 아파트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추진경위를 조사하기 위함.

2. 調査할 事案의 範圍

- 가. 산격아파트 지적정리 추진현황
- 나. 대지등기 미정리 원인 및 문제점
- 다. 아파트부지를 학교용지로 매각 경위

3. 調査委員會：建設委員會

4. 根據條例：大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관한條例

大邱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

15. 山格아파트地籍整理推進經緯調查計劃案

□ 調査의 目的

- 산격아파트가 '79년, '80년 각각 신축분양된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, 아파트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,
- 입주민들의 공유지분 감소분 환원요구와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및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
- 아파트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 추진경위를 조사하기 위함.